
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.

발 의 자 : 권성동 · 윤한홍 · 신성범
김재섭 · 박형수 · 김장겸
권영세 · 강명구 · 정동만
유상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·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임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,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임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,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(안 제

23조).

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법률·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”를 “변호사 등 법률·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가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③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듣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.

1.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
2.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
3.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
4. 진술을 할 때에는 변호사 등 법률·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

④ 조사원은 제3항에 따라 알릴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,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답변은 조사대상자의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조사 시 전문가의 조력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행정조사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조사권 행사의 제한) ① (생 략) ② 조사대상자는 <u>법률·회계</u> <u>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</u> <u>관계 전문가</u>로 하여금 행정조 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케 하거 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 다. <신 설>	제23조(조사권 행사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변호사 등 <u>법률·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</u> <u>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전</u> <u>문가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 ③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의 <u>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듣기</u> <u>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</u> <u>려주어야 한다.</u> 1. <u>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</u> <u>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</u> <u>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</u> <u>는 것</u> 2. <u>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</u> <u>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</u> 3. <u>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</u> <u>하고 행한 진술은 행정조사</u> <u>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</u>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
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
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
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
한다.

될 수 있다는 것

4. 진술을 할 때에는 변호사 등
법률·회계에 관하여 전문지
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
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
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
있다는 것

④ 조사원은 제3항에 따라 알릴
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진술을 거
부할 권리와 전문가의 조력을
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
여부를 질문하고, 이에 대한 조
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사대상
자의 답변은 조사대상자의 자필
로 기재하게 하거나 조사원이
조사대상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
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
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⑥ ----- 제5
항-----

-----.